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9.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5.

다. 상 정 일 자 :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9.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추진 필요성

-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 위탁계약기간이 2022.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아동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아동 상담 및 등록·관리
-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가족지원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례관리평가
- 지역사회 장애인식 편견해소 및 홍보

○ 위탁시설 현황

시설(센터)명	위치	시설규모	위탁기관	인력	2022년 예산(천원)
5개소	합 계			37	1,892,760
송산장애아동재활센터	송산보건지소 내	167.3㎡	동남보건대학교	5	257,660
장안장애아동재활센터	장안보건지소 내	124㎡	산학협력단	5	266,000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병점4로 58, 1,2층	454㎡	가톨릭대학교	11	526,400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내	178.2㎡	성빈센트병원	6	317,700
동탄장애아동재활센터	동탄보건소 내	211㎡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0	525,000

○ 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 (5년)
- 위탁자의 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상의 의료법인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2022. 10.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공고기간 20일)
- 2022. 11.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2. 12.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공증 등
- 2023. 01. : 민간위탁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 위탁계약기간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아동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재활치료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활센터별 장애유형, 전문인력 배치,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공증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공증의무 규정이 2021. 7. 12.자로 삭제됨에 따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민간위탁 추진 시, 협약체결 공증은 불필요할 것으로 확인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5.

다. 상 정 일 자 :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9.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이양노)

가. 제안이유

○ 추진필요성

- 본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화성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 영양교육,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위탁기간), 제20조(재계약)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경험이 있고, 전문 인력(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 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개요

-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 순회방문
- 연령별·유형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 대상별(어린이·조리원·원장·교사·부모) 위생 및 영양교육
- 식중독 예방 등 1:1 급식소 컨설팅
- 특화사업: 편식예방 영어캠프, 인형극, 어린이식생활체험관 운영, 환경호르몬 관리, 나트륨 및 당 줄이기 사업 등

○ 위탁사무 내용

- 시 설 명: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 재 지: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 수탁기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사무 내용: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시설운영 현황

종사인력(명)									사용 시설(m ²)				
계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팀원					계	사무실1	사무실2	사무실3 및 회의실	기타 시설 (체험관)
				기획 운영팀	위생 1팀	위생 2팀	영양 1팀	영양 2팀					
37	1	1	5	6	6	6	6	6	393	81	110	72	130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2023. 1. 1. ~ 2024.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 재계약 대상: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성과평가 결과 98점 취득으로 재계약 대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붙임 참조)

○ 기타 민간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23년 민간위탁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2023년	1,886,000	943,000	141,450	801,550

※ 연도별 사업규모 변동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위탁기간), 제20조(재계약)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경험이 있고, 전문 인력(영양사·위생사·식품기사 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하여, 전문 인력 및 축적된 네트워크 활용과 더불어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보호아동에 대한 급식전달 체계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성장시기에 맞는 균형있는 식단이 보급되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9. 2. 전성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9. 5.

다. 상 정 일 자 :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9.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관할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할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장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조례 개정의 실익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